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폴링제 시행계획 송부

1. 추진 근거

- 제28회 국가위 제3호 안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 제35회 국과위 제4호 안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방안」
- 제43회 국과위 제6호 안건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개선 추진 실적 점검결과(안)」

2. 우리부는 2011년도 학생인건비 폴링제 적용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위해 12개 관련부서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교과부, 지경부, 국토부, 복지부 등 9개 관련부의 총 396개 사업(붙임 2)을 2011년도 폴링제 적용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2011년도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해당사업에 대해 폴링제를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관련부처 소관 전문기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폴링제 시행대학(붙임 1)에 대해서 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협약, 정산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제43회 국과위 제6호 안건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개선 추진실적 점검결과(안)」에 따라 폴링제 미시행 4개 관계부처*는 관련 R&D 소관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제도를 도입하여 주시고, 이행 완료시 다음 서식에 따라 우리부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시행부처(4개) :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o 보고서식

부처명	관련 규정(예시)	주요내용(예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 (별표1) 대학의 학생인건비는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후 연수과정 포함)의 인건비는 연구원 수준별 man-month 총액으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2. 제43회 국과위 제6호 안건 1부. 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수신처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상청장,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가톨릭대학교총장, 경남대학교총장, 경북대학교총장, 고려대학교총장, 공주대학교총장, 국민대학교총장, 금오공과대학교총장, 대구대학교총장, 동아대학교총장, 목포대학교총장, 부산대학교총장, 서강대학교총장, 서울대학교총장, 성균관대학교총장, 연세대학교총장, 영남대학교총장, 원광대학교총장, 인제대학교총장, 전북대학교총장, 중앙대학교총장, 충남대학교총장, 충북대학교총장, 포항공과대학교총장, 한국항공대학교총장, 한림대학교총장, 한양대학교총장, 건국대학교총장, 경상대학교총장, 강원대학교총장, 단국대학교총장, 배재대학교총장, 숙명여자대학교총장, 순천대학교총장, 숭실대학교총장, 아주대학교총장, 울산대학교총장, 전남대학교총장, 제주대학교총장, 한국해양대학교총장,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강원대학교총장, 동국대학교총장, 부경대학교총장, 상명대학교총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인하대학교총장, 광주과학기술원총장, 한국과학기술원총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장

주무관

채정이

공업사무관

이제준

서기관

대결 02/24

박진희

협조자

시행 과학기술전략과-729 ((2011.02.24.)) 접수 정책개발실-100 ((2011.02.24.))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806 / www.mest.go.kr

호

전화 02-2100-6626

전송 02-2100-6598

/ chaejy12@mest.go.kr

/ 공개